

# 예 산 총 칙

2016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16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46,802,602	19,404,078
일반회계	573,571,566	17,207,147
특별회계	73,231,036	2,196,931
공기업특별회계	68,192,957	2,045,789
상수도사업특별회계	41,793,136	1,253,794
하수도사업특별회계	26,399,821	791,995
기타특별회계	5,038,079	151,142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469,787	44,094
거제시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 보상특별회계	500,000	15,000
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	750,000	22,500
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	144,469	4,334
폐기물처리시설사업기타특별회계	1,852,823	55,585
지하수특별회계	321,000	9,63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"채무부담행위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,599,939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(공기업 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4,8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